

### [서식 예] 배임죄

## 고 소 장

고 소 인 O O (주민등록번호 111111-1111111) OO시 OO구 OO길 OO (전화번호: 010-0000-0000)

피고소인 △ △ (주민등록번호 111111-1111111) ○○시 ○구 ○길 ○○ (전화번호: 010-0000-0000)

### 고소취지

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배임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고 소 사 실

고소인은 피고소인과 20○○. ○. ○. ○○:○○경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에 있는 ○○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피고소인 소유의 같은 길 ○○에 있는 대지 120평, 건평68평의 주택 1동에 대하여 계약당일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, 같은 달 21. 중도금 3억원을 지급하며, 같은 달 30. 잔금 3억 원은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 그 후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매매계약체결 당일날 계약금 1억 원을, 같은 달 21. 중도금 3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. 이로써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위 주택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습니다. 그런데 피고소인은 위 임무를 위배하고 같은 달 25.경 고소 외 박□□에게 대금 10억 원에 위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주어 위 부동산 시가 상당의 재산상



이익을 취득하고, 고소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기에 본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.

# 입 증 방 법

추후 조사시에 제출하겠습니다.

20 이 이 년 이 일 이 일

위 고소인 ○ ○ (인)

○ ○ 경 찰 서 장(또는 ○ ○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) 귀 중



제출기관	범죄지, 피의자의 주소, 거소		
	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청	공소시효	7년(☞공소시효일람표)
고소권자	피해자(형사소송법 제223조)	소추요건	※ 아래(2) 참조
	(※ 아래(1)참조)		(형법 제361조, 제328조)
제출부수	고소장 1부	관련법규	형법 355조2항
범죄성립 요 건	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		
	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		
	손해를 가한 때		
형 량	• 5년 이하의 징역		
	• 1,500만원 이하의 벌금		
	(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: 형법 358조)		
불기소처분 등에 대 한 불복절차 및 기 간	(항고)		
	•근거 : 검찰청법 제10조		
	・기간 :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(검찰청법 제10조4항)		
	(재정신청)		
	•근거 : 형사소송법 제260조		
	•기간 :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		
	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(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)		
	(헌법소원)		
	・근거 : 헌법재판소법 제68조		
	•기간 :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, 그 사유가		
	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		
	의한 구세절자를 거친 헌법조원의 검관는 그 최충설정을 통시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(헌법재판소법 제69조)		
	근도부터 50년 역대에 경기(원립세원도립 제U3도)		

#### ※ (1) 고소권자

(형사소송법 제225조)

- 1.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
- 2.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, 자매. 단,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

### (형사소송법 제224조)

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[단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"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(고소의제한)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."고 규정함]

### ※ (2)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(형법 제361조, 제328조)

- 1. 직계혈족, 배우자, 동거친족,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
- 2.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
- 3.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